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 언어 지원 조례

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4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,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청각장애인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 장애인을 말한다.
- 2. "편의시설"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· 운영되는 자막시스템,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.
- 3. "공공시설"이란 오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및 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이 설치·운영 하거나 관리하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령」제3조에 따른 공연장·집회장·관람장·체육관·운동장 등을 말한다.
- 4. "한국수화언어(이하"한국수어"라 한다)"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·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.
- 5. "농문화"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.
- 6. "자막시스템"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 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7. "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"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.
- 8. "한국수어 통역사"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국어를 한국 수어로, 한국수어를 국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 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

-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.
 - 1.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(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)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이상인 시설
 - 2.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(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)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
- 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편의시설의 설치 등) ① 시장 및 출자·출연기관장(이하 "기관장"이라 한다)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청 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,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,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공공시설의 투·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)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,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

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한국수어 활성화)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·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 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시민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9조(한국수어 통역사 교육 등)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,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지원)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1조(민간에의 권장) ① 시장 및 기관장은 제4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인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·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는 공 공시설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